

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

심사 보고

1996. 4.

교육사회위원회

1. 심사 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교육감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1996년 4월 8일

○ 회부일자 : 1996년 4월 8일

다. 상정일자 : 1996년 4월 19일

제1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행정관리담당관 정 금 옥)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(1995. 12. 30., 대통령령 제 14,877호)의 개정 및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 (1995. 12. 29., 대통령령 제 14,857호)과 국외여비 규정의 개정 (1995. 6. 10., 대통령령 제 14,662호)으로 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액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3.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김 영 만)

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(1995. 12. 30 대통령령 제 14,877호)의 개정으로 이를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규정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

- "회의수당을"을 "회의수당(원격지 회의 출석비를 포함한다)을"로 하여 원격지 회의 출석비를 포함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하고
단서 규정을 신설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토록 하며
- 회의수당 지급기준에 있어
 - 제2항을 신설하여, 원격지 회의 출석비는 회의 당일 출·퇴근이 곤란한 원격지 (위원회 사무실 소재로 부터 편도거리 60킬로 이상) 지역에 거주하는 위원이 회기종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 한하여 "국내여비지급기준표"에 의하여 지급하며
 - 제2항의 원격지 회의 출석비 지급대상 지역을 제3항으로 신설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려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경과 : 원안 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개정조례안 : 별첨